제367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4 호

국회사무처

2019년3월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1
О	예산결산특별위원장(황영철) 인사8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
3.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9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9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10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10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10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10
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 … 11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О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 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 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워입니다.

먼저 2019년 들어서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올해 첫 국회가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입법으로 더 나은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 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께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두 달간 여당과 제1 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서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 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 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근거해서 상대 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떡궁합을 잘하는지요. 작년 예산 심사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3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두 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바로 그 예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국익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당리당략만을 계산하고 국회 개회조차 거부하는 구태정치 이제는 제발 그만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3년 차 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국민들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미세먼지 공약이 허언이었다는 것 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문자 또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뿌연 하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 이것이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부익부빈 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소득주도성장의성과를 보기 위해서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지난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

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뒤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한 위기는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했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 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청와대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드루킹의 불법댓글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에 보여 준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이 자리에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 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십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부대, 젠더 갈등, 한반도비핵화를 둘러싼 남남갈등, 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해법은 요원하고 그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 큼이나 뿌옇게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 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버텨 온 저력의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면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출산율 최하위, 자살률최상위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 내는 정치 개혁 과제,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 또 우리 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 생개혁 과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개의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정치가 가장 후진하다. 문재인 정부 3년 차 대한민국 정 치개혁의 첫 출발은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면서 내 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 류 분실 또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 이런 것들은 구중궁궐과도 같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청와대 개혁을 위해서는 첫째로 청와대 특별감 찰반의 기능을 축소해야 합니다. 청와대 특별감 찰반은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 기능은 없애야 합니 다. 이번 정부가 정보기관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은 폐지하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감찰 인력이 많고 적은 것이 문 제가 아니라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도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보 기에 바쁩니다.

둘째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에 의해서 임 명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2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수처 처리 요구 에 앞서서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할 의지를 보 여 주고 법도 지켜야 합니다.

셋째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 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넘겨야 합니다. 책임내각을 하겠다고 말 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조직 축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 주십시오.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내각으로 일을 과감하게 넘겨 주십시오.

넷째,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 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대 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 모두의 대통령인 이상 각 종 국정 현안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례적으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한 달 은 야당 대표들과, 한 달은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통해서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 달부터 여야정 상설협 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정국의 많 은 현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야 간 빅딜 을 통해서 국정 운영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

다. 그러나 제대로 된 답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문 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 다. 이전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 던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 만큼은 데칼코마니처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 루에 1명씩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와 집권 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 정 부에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경쟁 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비단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 영역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문성이 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 관에 비전문가 사장이 임명되는 것이 얼마나 무 모하고 위험합니까? 지난해 지역난방 사고와 강 릉 KTX 사고에서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같은 식구를 채용하고 연고주의 채용 이러한 채용비리의 싹 역시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더 심 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그간에 이루어진 무차별 투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남은 임기 동안 하 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십시오.

또 대통령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내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만이 잘할 수 있다' 는 생각은 '그래야 내 정권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보신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최 고의 인재를 찾아서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가 할 일도 있 습니다. 며칠 내로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검 증하되 국회의 권위를 살릴 수 있는 인사청문회 를 만듭시다. 꼭 필요한 도덕성 자질은 철저하게 검증하되 정책 수행 능력의 검증에도 국회가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아울러 인사청문제도 역시 개선해서 매듭져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결과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기속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매듭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의 특권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바른미래당 주도로 실질적으로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단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제안합니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입니다. 적법한 사용은 물론이고 도 덕적으로도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최 근 우리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 거릴 정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또 재판 청 탁 이런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 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스스로 자정하지 못 하는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회는 이와는 별도로 입법적 의무가 또 있습니다. 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반영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 관련 부분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 개원 때부터 우리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내 준 지지대로 국회의 의 석수를 가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대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장을 열 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 명 한 명의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여야 5당 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패스트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며칠 전에

비례대표제 폐지하겠다, 지역구를 270석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으로서 이것은 위헌적 발상입니다.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킵니다. 반개혁적이고반민주적인 억지안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놓았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 대 1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단일안을 만들고 그 단일안이 만들어진다면 빠른 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330일 이후에 표결할 수 있을 뿐 최종적인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하는 것이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을 위해 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 게 촉구합니다.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정말지독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그방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지금은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숨 고르기가 꼭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 주고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한 적응 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경제 상황을 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다시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또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또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 다.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 52시간, 이것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유연근로제는 사 용자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노 동자에게도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을 것을 요청합니다.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국내 투자를 지금 꺼 리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는 노동과 관련한 제도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 음으로 바른미래당은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 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성장 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일자 리 통계 또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 의 경제 상황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최저임금 올리고 소득 보조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리겠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경쟁 없이 공으로 얻어진 것 들은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정부는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여러 시책 들이 민간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 십니까? 소득주도성장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 런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은 없애야 합니다. 이제 는 시장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기업들의 창의력이 하늘을 찌 를 수 있도록 정부는 한 발 물러서서 간접적으로 지원하십시오.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의 세계에 이제는 과거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많은 분야들 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산 업과 새로운 산업 사이에는 필연적인 갈등이 생 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의 공 존의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민 주당이 주도해서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들어서 해 결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홍영 표 원내대표님, 전현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 니다.

앞으로 제2의, 제3의 카풀 서비스 갈등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혁신적 기업이 만들어 낼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 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낡은 제도가 이들을 멈춰 세워서도 안 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혁신의 날개를 펴고 하늘 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도움닫기도 못 한다면 이것은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행정에 가장 요구되는 큰 과제는 바로 규제혁신입니다.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권한은 때로는 입법을 초월합니다. 법률이 제정된 후에 각종 행정입법 의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 가 생겨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한 철폐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 의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 들의 복지부동을 깨우고 적극적인 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기업의 새로운 도전이 끊임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서 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 주 십시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혁신 문제에서는 입법부도 저는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에다가 는 규제혁신을 요구하면서도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규제 법안을 또 한편으로는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 규제 법안이 제출된 경우에 법안 심의 단계에서 이 규제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절차 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 사건이 민간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에 서도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 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제가지난해 9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미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지적했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워마드와 일베의 갈등,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 이러한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의 진원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독한 갈등 사회,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은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나의 생각과 다른 집단을 매도하고 심지어 국가의 정책마저도 집단의이해에 맞춰서 재단하고 비난하기까지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꼭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 이것을 제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 성이 존중되고 통합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서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올해 초 3000명의 국민을 상대로 30년 후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조사 를 했습니다. 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기후' 와 '인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저출산, 합계출산율이 0.98에 불과합니

다. 지난해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연간 1만 2000명의 시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이미우리 옆에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오래전부터시작됐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해소, 자살 예방 여기에 여야의 당리당략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대책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 하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미세먼지 30% 감축하고 종합관리대책 만들겠다, 대통령 직속기구만들고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 이렇게네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절실함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국가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 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설치를 수용했습니다. 환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여야 협치의 좋은 모 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중국과 협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범 국가적 기구의 장으로 제안하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중국 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도 최 적임자입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 시절 파리기후 협약을 주도했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성까지 갖추고 계십니다.

저는 반 총장께서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출산 대책, 이제는 원점에서 검토하고 백년 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년간 120조를 쏟아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 최악의 출산율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취업, 주거, 육아, 교 육 등 많은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조건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 니다. 바로 범국가적인 대책과 실천이 필요한 이 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가 성인지 예산안을 만들고 있습니 다. 이것은 예산이 남녀의 성별 차이로 인해 차 별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관련 한 예산안을 전면 재분류하고 예산이 출산과 보 육, 교육 여기에 얼마나 충실하게 기여하는지 정 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 다

다음은 자살예방 대책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자살률 1위, 이제는 국가의 오명을 꼭 벗어나야 합니다. 자살은 개인 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언컨대 사회적 문제입니 다.

다행히 지난해 복지부에 자살예방과가 신설되 었고 국회에서는 64명의 여야 의원님이 동참한 자살예방포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 자살예 방포럼이 중심이 되어서 자살예방과 관련한 법제 의 전면적인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가 차원의 예산 증액도 대폭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자살예방 예산 218억 원 입니다. 이웃 일본, 연간 8000억 원입니다. 부끄 럽습니다. 자살예방 관련 예산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촉구합니다.

또 자살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민관 이 함께하는 특별기구 설립을 꼭 수립할 것을 제 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 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기 있 는 여성들의 미투 선언을 지지하고 또 이를 위한 입법 추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국회의 관심과 노력은 여 전히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 직장에서, 각종 노 동 현장에서 권력으로 피해 받는 여성 없게 하고 차별받는 여성이 없도록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 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많은 미투 법안을 서둘 러서 마무리 짓기를 요청드립니다.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제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작성 도 못 한 채 끝났습니다. 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ㆍ미 정상회담 후속 절차 로 이어진, 또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열린 회의였기 때 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 온 한반 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 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 협을 상당 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에 대해서도 평 가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습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 제입니다. 그러나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돌 다리를 두드리면서 건너는 심정으로 인내심을 가 지고 작은 것부터 성과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 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얼음보다 차갑게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결실은 특정 집단 의 전유물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외 교에 여야가 어디 있고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어 디 있습니까?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 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합 니다.

아울러서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 공히 일관 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저는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 표명, 실천적 행동 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 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만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의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들어서한미 연합 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안보 태세 확립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 긴밀하고면밀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외교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20대 국회 남은 1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부와 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번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 다. 그리고 그 목록을 만들어서 야당에게 제출하 고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야당은 그 제안에 책임 감 있게 응해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20대 국회의 마 지막 골든타임을 앞둔 지금 국회가 국민에 대해 서 져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냉정함을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갑시다. 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 국회, 당리당략은 잠시 내려놓고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여당은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국회에서 야당에게 매 맞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제1 야당은 정략적인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으로 국회운영에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심정으로 또 침몰할지도 모르는 배를 반 드시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합시다.

20대 국회 남은 동안 갈등을 넘어서 통합으로,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응 원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문희상** 김관영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황영철) 인사

(10시50분)

○의장 문희상 다음은 지난 3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영철 의원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철** 공무 출장 중에 치러진 선거로 인해서 뒤늦게 인사를 드리게 돼 서 죄송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나경원 원내대표님과 자유한국 당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의 따 뜻한 성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고향인 작은 지방 홍천으로 내려가서 기초의원으로 시작했습니다. 29년간 정의롭고 당당하게 길을 걸어오고자 했습니다만 상처와 허물이 많은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주신따뜻한 성원에 더욱더 깊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짧은 시간인 만큼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하게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실히반영되고 여야의 의견이 공유되고 잘 소통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냉철히감시하고 논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의 뜻깊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10시52분)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한홍 위 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윤한홍 존 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위원 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곽대훈 의원, 정재호 의원, 조배숙 의원, 이찬열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 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하여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서 국민 고통을 조금이나 마 덜어 드리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서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0시54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3항 항만지역 등 대 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대수 위원 나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경대수** 존경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위원입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 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도읍·강병원 의원 등이 각 대 표발의한 2건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한 안입니다.

현재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정도는 서울 등 대도시만큼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 법 령으로는 선박 운항 · 화물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 는 항만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 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를 예방 함과 동시에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 주요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표 시 자료를 참조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 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항 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한 특별법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0시56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4항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병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김병관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의원, 김병욱 의원, 김승희 의원, 강효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서 관리하 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 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 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이 밖에 부대의견으로서 정부로부터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 미세먼지 저감종합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미세먼지에 대한과학적 검증 및 조사를 바탕으로 재해·환경·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현재 이분법적인 자연·사회 재난 분류체계로는 미세먼지와 같은 재난을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난유형 분류체계 개선 의견을 3월 말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서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11시00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5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신보라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신보라입 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총 34건의 법률 안을 심사하여 통합 조정하여 제안한 법률안 4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의원과 임이자 의원, 신창현 의원, 송옥주 의원등이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실내공기 질 관리 대상에 포함했으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관리가 더 엄격히 적용되도록 했 습니다. 또한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 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이자 의원, 신창현 의원 등 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수행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 별법안은 임이자 의원, 송옥주 의원, 이상돈 의 원,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3건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 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수 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 총량관리 를 시행하고, 셋째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 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 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정미 의원, 정양석 의원, 김삼화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 한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 행됨에 따라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 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저공해자동차 보급, 구매, 임차 등에 관 한 사항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서 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낸 결과물인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5인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미 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대 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4인, 기권 3인으로서 대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
-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9항 공교육 정상화 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박경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 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경미 존경하는 의장님, 그 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교육부 소관 법 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 째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둘째 농산어 촌,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다시 신 설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의원, 정병국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유치원과 초・ 중·고등학교 장으로 하여금 각 교실의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 가나 지자체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하고 공 기 질의 측정 이력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공기 질 등 환경위생 점검을 상·하반기 별 1회 이상 확대 실시하고 공기 질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 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공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인, 기권 3인으로서 학 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 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문희상**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36인)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경 대 수 강 효 상 강 훈 식 고 용 진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권은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경 협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태 김 수 민 김 순 례 金成泰 김세연 김 영 주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희 상 민 경 욱 문 진 국 민병두 민홍철 박 광 온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백 재 현 박 찬 대 백 승 주 박 홍 근 백 혜 련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석 준 송 옥 주 신 동 근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워 유 철 워 혜 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종 필 윤 일 규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윤 준 호 윤 한 홍 이 규 회 이 만 희 이 상 돈 이 상 민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장 우 이정 쳙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규 이 채 익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훈 이 후 삼 인 재 근 0] 훈 임 이 자 임 재 훈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희 경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 유 섭 정태옥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주 광 덕 주 호 영 조 훈 현

지 상 욱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연혜 최 교 일 최 운 열 추경호 추 미 애 추 혜 선 하태경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문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1인)

정 종 섭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4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상 도 권 성 동 권 은 희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석기 선 동 김성수 김 상 희 김 김 성 식 김 성 원 김성 찬 김성태 金成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나 경 원 노 웅 래 김 현 아 남 인 순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민 병 두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주 민 박 주 현 박 박 찬 대 정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백 재 현 서 영 교 서 청 서 형 수 서 삼 석 워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영 길 신 동 근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엄용수 안 상 수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영 훈 여 상 규 오 신 환 원 유 철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 봉 유 승 민 유 승 회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유 상 현 유 영 석 윤 영 일 유 소 하 윤 재 옥 윤일 규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후 덕 이 만 희 이 규 희 이 상 돈 이 상 민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장우 이정현 이종걸 이 종 구 이종배 이 주 영 이 종 명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혀 재 이혜훈 이 후 삼 0] 후 인 재 근 장 병 완 임 이 자 임 재 훈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해 철 전 현 희 정 병 국 전 희 경 정 동 영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유섭 정 종 섭 정태옥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주 광 덕 주 호 영 지 상 욱 조 훈 현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추 미 애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한 정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함 진 규 홍 문 종 홍문표 홍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기권 의원(2인)

곽대훈 이은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6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도 읍 김동철 김 명 연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 석 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호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주 현 박 박 주 민 박 찬 대 정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삼 석 서 청 원 서 형 수 성 일 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안 상 수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여 상 규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오 제 세 우 워 식 워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유 영 일 유 소 하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유 호 중 윤 후 덕 이 규 회 이 만 희 이 동 섭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주 이용호 이 워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배 이 주 영 이종명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태규 이 헌 승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현 재 이 후 삼 이 혜 훈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재 훈 장 병 완 장 석 춘 전 해 철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현 희 전 희 경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 우 택 정세균 정 양 석 정용기 정 종 섭 조 배 숙 정 유 섭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호 영 지 상 욱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운 열 최 교 일 최 연 혜 추경호 하 태 경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영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기권 의원(2인)

박 영 선 정 태 옥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35인)

강 병 원 강 창 일 강석 진 강석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은 희 곽 상 도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규 화 김 도 읍 김동철 김 명 연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선 동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수 김성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회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 중 로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와 수 박 완 주 박용진 정 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성 일 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신 경 민 송 영 길 신 동 근 신보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 재 권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아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제 세 오 신 환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워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윤 관 석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일 규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규 회 이 동 섭 이 만 회 이 상 돈 이 상 민 이언주 이 완 영 이용주 이 원 욱 이용호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태규 이철규 이철희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훈 이 후 삼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재 훈 장 석 춘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현 회 전 해 철 전 희 경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양석 정세균 정용기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종 섭 정 태 옥 조경태 조 승 래 조 배 숙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호영 지 상 욱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추 경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의 락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5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은 희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관 영 김 경 협 김 광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병 관 김 민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김세연 김 수 민 金成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경 미 민 경 욱 민 홍 철

기권 의원(1인)

안 상 수

홍 의 락

황 영 철

(홍문종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 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35인, 기권 의원 1인임)

홍일 표

회

황

홍 철 호

홍 익 표

황 주 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7인)

강석호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김 경 진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수 김 도 읍 김 명 연 김 규 환 김 동 철 김 병 관 병 욱 김 민 기 김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 상 훈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 성 원 김성 찬 김 수 민 김성 태 세 연 金成泰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원 김 재 경 김 정 우 김정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학 용 김 태 흠 김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 성 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병두 민 홍 철 박 경 미 민 경 욱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선숙 박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영 선 박 와 주 박 용 진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정 박 찬 대 박홍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혜 원 성일종 송 기 헌 송 언 석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워 유 철 위성 곤 워 혜 영 유 기 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일 규 유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호 중 윤 한 홍 윤 후 덕 이규희 이 동 섭 이 만 희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용 주 이 완 영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종걸 이정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회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훈 인 재 근 이혜훈 0 임이 자 임 재 훈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제 전 해 철 전 현 희 장 원 전 희 경 정 동 영 정병국 정 성 호 정세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용 기 정 유 섭 정 종 섭 정태옥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호 영 지 상 욱 채 이 배 천정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추 경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홍 문 종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주 홍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회 황

기권 의원(1인)

이용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34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화 김 도 읍 김동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찬 김 성 원 김성 태 김 수 민 金成泰 김세연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원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호 김 정 김 종 민 김 종 석 훈 김종회 김 중 로 김 종 훈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아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 병 두 문 희 상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주 민 박용진 박 정 박 주 현 박 홍 근 백 승 주 박 찬 대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송 언 석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 용 신 창 현 신 보 라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호 영 안 민 석 안 상 수 안 규 백 여 상 규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우 상 호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워 식 워 유 철 워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재 중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윤 상 직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동 섭 이 만 희 이 규 희 이 언 주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양 수 이 완 영 이용주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정현 이종걸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학재 이 후 삼 이 헌 승 이 혀 재 이혜훈 임 재 훈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회 경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용기 정 유 섭 정 종 섭 정 태 옥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주 광 덕 조 훈 현 주 호 영 지 상 욱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기권 의원(3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조 응 천

이용호

송 영 길

찬성 의원(221인)

강 창 일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고 용 진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식 김 세 연 김성원 김 성 태 金成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문 희 상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명 재 박 대 출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성 일 종 소병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옥 주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안 규 백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일 규 윤 재 옥 윤종 필 윤 준 호 유호중 유 후 덕 이규회 이 동 섭 이 만 희 이양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걸 이 진 복 이종배 이 채 익 이철규 이 학 영 이철희 이태규 이학재 이 후 삼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0 훈 인 재 근 임이자 임 재 훈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해 철 정 병 국 전 희 경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종 섭 정태옥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호 영 지 상 욱 채 이 배 천정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하 태 경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익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6인)

김성찬 윤한홍 이용주 이주영 정동영 홍문종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두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4인)

강 병 원 강석호 강 창 일 강 석 진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상 도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경 진 김 경 협 김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워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반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성 일 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보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상 수 안 규 백 안 민 석 아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유 재 중 유 승 희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일 규 윤 종 필 윤 후 덕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이규희 이 동 섭 이 만 희 이 상 민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인영 이장우 이종걸 이 종 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진복 이종배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태규 이 학 영 이학재 이 헌 승 이현재 이 후 삼 인 재 근 이혜훈 0 훈 장 병 완 임 이 자 임 재 훈 장 석 춘 장 정 숙 전 해 철 전 희 경 정 동 영 정병국 정양석 정성호 정세균 정 우 택 정 용 기 정 유 섭 정 종 섭 정태옥 조 승 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호 영 지 상 욱 채 이 배 천정배 최경환(평) 추경호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영 철 기권 의원(3인)

○출석 의원(260인)

이정현

곽 대 훈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관 영 김 도 읍 김 명 연 김 규 환 김 동 철 김민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하태경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재 김 정 우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종 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주 민 박 박 주 선 정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신 동 근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호 영 안 상 수 어 기 구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위성 곤 워 혜 영 유기준 유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일 규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준 호 윤 한 홍 이 개호 이 규 희 이동섭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장 우 이정미 이종걸 이 종 구 이종명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철회 이철규 이태규 이학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임 재 훈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제 원 전 해 철 전 현 희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양 석

정 용 기

김 영 춘 김 재 원 김 정 훈 김 종 훈 김 철 민 김 한 정 나 경 원 맹성규 민 병 두 박 대 출 박 범 계 박 순 자 박 용 진 박 주 현 백 승 주 서 삼 석 성일종 송 기 헌 송 옥 주 신 상 진 심 상 정 안 민 석 엄용수 오 영 훈 원 유 철 유동수 유 승 희 윤 관 석 윤 영 석 윤 종 필 윤 후 덕 이 만 희 이석현 이 용 주 이 은 재 이정현 이종배 이 채 익 이 학 영 이혜훈 임 이 자 장 정 숙 전 희 경 정세 균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태옥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지 상 욱 조 훈 현 주 광 덕 주 호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화(평)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재 성 추 경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추 혜 선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개의 시 재석 의원(209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곽 상 도 고 용 진 곽 대 훈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민 기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 수 민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호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태 년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도 종 환 맹 성 규 민병두 문 진 국 문 희 상 민경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서 영 교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청 워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기헌 송 석 준 송 언 석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 민 봉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소 하 윤 영 석 윤일 규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규 희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민 이 양 수 이 석 현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장우 이정현 이 인 영 이정미 이종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차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태규 이 철 희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재 훈 병 완 장 석 춘 장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해 철 전 희 경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용기 우 택 정 운 천 정 정인화 정 유 섭 정 종 섭 정 태 옥 조 훈 현 주 광 덕 주호영 조 배 숙 지 상 욱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연 혜 추경호 최 교 일 최 운 열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홍 문 종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산회 시 재석 의원(227인)

강 병 원 강 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성 동 권 은 희 금 태 섭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긲 김 광 수 광 림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민 기 김 병 욱 김 병 관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 태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영 호 김 재 경 김 김 정 우 김 재 원 김정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종 훈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 성 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광 온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병 석 박 성 중 박 범 계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 진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찬 대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박 홍 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보라 신 상 진 신 창 현 신용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규희 이 동 섭 이 만 희 이상민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인영 이장우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배 이종명 이 주 영 이진복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태규 이 학 영 이학재 이 헌 승 이 후 삼 이 현 재 이혜훈 임 재 훈 \circ 후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해 철 정병국 전 희 경 정 동 영 정성호 정세균 정 우 택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유 섭 정 종 섭 정태옥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호 영 지 상 욱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연 혜 최 교 일 최 운 열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영 표 황 주 홍 홍 철 호 황 영 철

○청가 의원(27인)

강 길 부 김기선 권 미 혁 김무성 김성환 김 해 영 김 현 미 박 재 호 설 후 송 희 경 이상헌 이 수 혁 이용득 이재정 이 춘 석 이 해 찬 임 종 성 전 재 수 전 혜 숙 정 재 호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정 식 주 승용 진 선 미 최도자

○국회 참석자

사 무 총 장 유 인 태 사 국 장 권 영 의 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0] 낙 연 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	남	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	슨	혜
통 일 부 장 관	조	명	균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국 방 부 장 관	정	경	두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	종	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0	개	호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환 경 부 장 관	조	명	래
고용노동부장관	\circ	재	갑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	종	학
소시 지터이이			

○출석 정부위원

외교부제2차관 \circ 태 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일 정 승 여성가족부차관 김 희 경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 정 렬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4차 산업혁명 특별	정병국	바른미래당	2019. 3. 12.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사법개혁 특별	박영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2019. 3. 13.

○의안 제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사 청문요청안

(2019. 3. 12. 대통령 제출)

3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추혜선·심상정·이정미·김종대· 윤소하 · 이학영 · 고용진 · 표창원 · 이명수 · 민병두 · 이철희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2. 변재일·김병기·노웅래·소병훈· 신동근 · 신창현 · 유승희 · 이석현 · 이원욱 · 이철희·한정애 의원 발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2019. 3. 12. 정부 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변재일·김병기·노웅래·소병훈· 신동근·신창현·유승희·이석현·이원욱· 이철희·한정애 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조훈현·정우택·송언석·백승주· 최연혜·홍철호·김석기·엄용수·강석호· 신보라 의원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조훈현·정우택·송언석·백승주· 최연혜·홍철호·김석기·엄용수·강석호· 신보라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2. 서삼석·신창현·조승래·어기구· 위성곤·맹성규·유동수·박정·노웅래· 김철민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임이자·김성찬·홍문종·장석춘· 김정재·윤종필·홍문표·강석호·원유철· 송희경 의원 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2. 김해영·민홍철·박재호·서형수· 하태경·윤준호·김정훈·최인호·이상헌· 이진복·장제원·유기준·제윤경·전재수· 유재중·김세연·김정호·윤상직·조경태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김영우·김상훈·홍철호·이장우· 박덕흠·백승주·추경호·윤상직·정양석· 김종석 의원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김해영·민홍철·박재호·서형수· 하태경·윤준호·김정훈·최인호·이상헌· 이진복·장제원·유기준·제윤경·전재수· 유재중·김세연·김정호·윤상직·조경태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전재수·신창현·이종걸·이찬열· 최인호·박재호·윤준호·김해영·최재성· 김철민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2. 서삼석·신창현·조승래·어기구· 위성곤·맹성규·유동수·윤준호·박정· 노웅래·김철민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서삼석·신창현·조승래·어기구· 위성곤·맹성규·유동수·윤준호·박정· 노웅래·김철민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훈· 김종대·김상희·정동영·우상호·추혜선· 천정배·박선숙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2. 윤영석·박맹우·박성중·김승희· 곽대훈·윤종필·윤상직·이진복·황주홍· 정갑윤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2. 이주영·윤상직·김성원·정갑윤· 여상규·함진규·박명재·경대수·홍일표· 문진국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2. 황주홍·장병완·이찬열·안규백· 김성찬·이동섭·경대수·안민석·유성엽· 원유철·박지원·신용현·위성곤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2. 신동근·김철민·기동민·윤일규· 이동섭·김현권·서영교·변재일·강훈식· 이석현 의원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김진표·유승민·김영진·백혜련· 이찬열·안규백·김병기·김종대·민홍철· 김동철·박광온·최재성 의원 발의)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김광수·천정배·정인화·김경진· 조배숙 · 김종회 · 유성엽 · 장병완 · 황주홍 · 이찬열 의원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신동근·김해영·이종걸·이철희· 김철민 · 기동민 · 민홍철 · 윤일규 · 이동섭 · 김현권·서영교·변재일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김병기·신경민·박정·표창원· 김종민 · 이상헌 · 김병욱 · 김영호 · 이원욱 · 윤후덕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훈· 김종대・우상호・정동영・김상희・추혜선・ 천정배 · 박선숙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서삼석·신창현·조승래·어기구· 위성곤 · 맹성규 · 유동수 · 박정 · 노웅래 · 김철민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강석진·엄용수·김성찬·박덕흠· 조원진 · 이양수 · 황주홍 · 함진규 · 정양석 · 원유철·추경호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이헌승・함진규・임이자・홍철호・ 이현재 · 박덕흠 · 곽대훈 · 박순자 · 김석기 · 이진복 의원 발의)

이상 27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9. 3. 13. 교육위원장 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 3. 13.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19. 3. 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2019. 3. 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9. 3. 13.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휴회의 건

(2019. 3. 13. 의장 제의)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5일간)

○의안 심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2. 17. 송옥주·김정우·신창현·김종민· 김관영 · 서형수 · 우원식 · 윤관석 · 김수민 · 김영호 · 이용득 · 원혜영 · 한정애 · 소병훈 · 김영춘·김성수·강병원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018. 9. 21. 박경미·조승래·조정식·백혜련· 이규희 · 김정우 · 임종성 · 송갑석 · 서영교 · 박찬대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2019. 2. 28. 정병국·김선동·김수민·김중로· 김철민 · 박인숙 · 신용현 · 원유철 · 유승민 · 유의동·이태규·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교육위원장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신용현·안철수·박지원·주승용· 김관영·박주현·이동섭·송기석·천정배· 이용주 · 박선숙 · 김광수 · 최도자 · 윤영일 · 박준영 · 정인화 · 김삼화 · 오세정 · 김수민 · 김종회 · 최경환(국) · 이찬열 · 이용호 · 김경진 · 채이배 · 이태규 · 조배숙 · 김동철 · 이언주 · 김성식 · 장병완 · 유성엽 · 박주선 · 권은희 · 김중로 · 손금주 · 이상돈 · 장정숙 · 정동영 · 황주홍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4. 4. 김병욱·안호영·안민석·이찬열· 김철민·송기헌·기동민·조승래·정재호· 유동수·문희상·이용득·최인호·송옥주· 김성수·심기준·박완주·노웅래·전해철· 소병훈·박재호·김상희·김병기·신창현· 강병원·이수혁·어기구·김한정·김두관· 최운열·고용진·김해영·진선미·박정· 설훈·심재권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4. 18. 김승희·김종석·김도읍·김성찬· 유재중·문진국·김성원·이양수·김기선· 최교일·김상훈·강석진·김순례·김현아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2. 21. 강효상·곽대훈·윤종필·이완영· 엄용수·정유섭·김승희·김기선·김선동· 염동열·최교일·김성찬·이헌승·정종섭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8. 8. 29. 강병원·조승래·김영호·정재호· 서영교·백혜련·유동수·김병기·신창현· 윤준호·박주현·심재권·이규희·서삼석· 송옥주·김병욱·김영춘·이찬열·김철민· 우원식 의원 발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3. 김도읍·장석춘·홍철호·박덕흠· 이진복·김현아·김선동·이장우·나경원· 송석준·김광림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8. 곽대훈·박명재·김석기·주호영· 김상훈·정태옥·윤재옥·이채익·정운천· 곽상도·김도읍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0. 윤한홍·김선동·이찬열·김종석· 김규환·김성식·박맹우·오제세·이종구· 이채익·경대수·조배숙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7. 7. 10. 정재호·이종걸·이동섭·윤영일· 전재수·이찬열·김영진·서영교·강창일· 전혜숙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7. 조배숙·김광수·김종회·박준영· 손금주·신용현·유성엽·이용호·이찬열· 정동영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 2. 이찬열·김경진·김해영·박광온· 이동섭·김종회·황주홍·주승용·전혜숙· 위성곤 의원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9. 21. 권칠승·박정·박광온·김해영· 이수혁·김병욱·고용진·이춘석·임종성· 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2. 17. 송옥주·김정우·신창현·김종민· 김관영·서형수·우원식·윤관석·김수민· 김영호·이용득·원혜영·한정애·소병훈· 김영춘·강병원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12. 8. 송옥주·신경민·소병훈·김철민· 김영호·정동영·김중로·김정우·유동수· 신창현·박정·박경미·전해철·윤관석· 추미애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 8. 박순자·이완영·이종배·강석진· 조경태·박성중·함진규·홍문종·원유철· 성일종·김석기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임이자·송희경·함진규·윤영일· 김명연・金成泰・원유철・문진국・윤종필・ 김상훈 · 김한표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3. 15. 송옥주·박정·한정애·윤관석· 강병원 · 박찬대 · 김정우 · 김병욱 · 전혜숙 · 이용득 · 유동수 · 신창현 · 이정미 · 서형수 · 홍영표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5. 25. 채이배·신용현·이학재·박주민· 박범계 · 천정배 · 권은희 · 하태경 · 김중로 · 박선숙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6. 29. 임이자·홍문종·윤종필·장석춘· 문진국 · 함진규 · 김삼화 · 심재철 · 원유철 · 안상수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8. 7. 9. 신보라·박명재·이철규·추경호· 강석진 · 이종배 · 정유섭 · 송희경 · 홍일표 · 강길부·하태경·이완영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8. 21. 송옥주·강훈식·권미혁·김성수· 박재호 · 신창현 · 윤후덕 · 이용득 · 이찬열 · 이훈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신창현·김철민·김병기·최재성· 이종걸・박찬대・이수혁・정세균・전재수・ 심재권 · 원혜영 · 남인순 · 이철희 · 표창원 · 오영훈 • 윤후덕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신창현·윤준호·박병석·남인순· 김병기・송옥주・전재수・윤일규・김영호・ 송갑석 · 권미혁 · 박찬대 · 서영교 · 최재성 · 김병욱 · 노웅래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임이자·이종배·정용기·이채익·

이명수・정태옥・김성찬・장석춘・강석호・ 강효상·문진국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6. 7. 21. 이용득·김현권·민병두·박주민· 서형수・소병훈・손혜원・안규백・윤호중・ 원혜영 · 이동섭 · 이석현 · 이종걸 · 임종성 · 전현희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7. 21. 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 최경환(국) · 김종회 · 민홍철 · 이개호 · 김관영 · 이찬열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6. 8. 12. 문진국·정갑윤·김정재·여상규· 장석춘 · 이종배 · 황주홍 · 김현아 · 서영교 · 김삼화ㆍ이종명ㆍ서형수ㆍ김성태ㆍ김선동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4. 홍영표・서형수・이찬열・장정숙・ 최도자 · 우원식 · 어기구 · 양승조 · 홍익표 · 백혜련 · 김진표 · 김병관 · 박광온 · 신동근 · 유동수 · 전해철 · 전혜숙 · 권칠승 · 박주민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한정애·신창현·박홍근·박정· 송옥주 · 민홍철 · 강병원 · 이정미 · 이학영 · 윤호중·우원식·원혜영·김상희 의원 발의)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6. 23. 강병원·정성호·고용진·김경협· 유동수 · 서영교 · 이원욱 · 박찬대 · 김상희 · 기동민 · 김민기 · 최운열 · 박정 · 어기구 · 송옥주·제윤경·민홍철·김종민·강훈식· 김병욱・소병훈・김철민・윤후덕・백혜련・ 진선미 · 백재현 · 양승조 · 안민석 · 김삼화 · 신창현 · 김영주 · 정재호 · 노웅래 · 유승희 · 김병기・이춘석・황희・안호영・김영호・ 박용진 · 이용득 · 문희상 · 서형수 · 임종성 · 한정애 · 윤관석 · 안규백 · 이재정 · 박남춘 · 홍영표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7. 8. 16. 성일종·이명수·주광덕·김명연· 김성찬·정태옥·김석기·나경원·이진복· 정갑윤·오신환·송희경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7. 8. 22. 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 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 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9. 28. 송옥주·강병원·서형수·신창현· 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 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 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 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 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 24. 임이자·金成泰·문진국·송희경· 함진규·윤영일·김명연·정유섭·김성찬· 성일종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8. 3. 5. 전혜숙·김병욱·송옥주·강훈식· 유동수·강병원·신창현·장정숙·김영진· 이찬열·천정배·설훈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3. 22. 송옥주·강병원·강창일·신창현· 안규백·어기구·전혜숙·정성호·제윤경· 한정애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8. 3. 30. 원유철·서청원·김석기·송희경· 김중로·정병국·나경원·이만희·안상수· 조후현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8. 5. 3. 심재권·이수혁·노웅래·박주민· 유승희·송옥주·조정식·백재현·신창현· 송영길·황희·권미혁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2018. 6. 11. 이상돈·권칠승·윤영일·장정숙· 박영선·박주현·문진국·조배숙·유승희· 송옥주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 발의)

(2017. 3. 24. 정양석·김재경·김용태·경대수· 이종구·민경욱·김상훈·김현아·주호영· 이채익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3. 강병원·정성호·고용진·김경협·유동수·서영교·이원욱·박찬대·김상희·기동민·김민기·최운열·박정·어기구·송옥주·제윤경·민홍철·김종민·강훈식·김병욱·소병훈·김철민·윤후덕·백혜련·진선미·백재현·양승조·안민석·김삼화·신창현·김영주·정재호·노웅래·유승희·김병기·이춘석·황희·안호영·김영호·박용진·이용득·문희상·서형수·임종성·한정애·윤관석·안규백·이재정·박남춘·홍영표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7. 8. 22. 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 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 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 최도자·이동섭·이찬열·신용현· 하태경·정성호·고용진·심재권·주승용· 김광수·오세정·박완수·김경진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8. 4. 24. 김삼화·임이자·서형수·이찬열· 이동섭·오세정·이언주·송옥주·정병국· 신용현·권은희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 신창현·권칠승·김병기·송옥주· 문희상·정재호·위성곤·박경미·노웅래· 유승희·심재권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 발의)

(2018. 9. 13. 장제원·송희경·주호영·추경호· 홍철호·김용태·엄용수·원유철·김성찬· 최연혜・유민봉 의원 발의)

(이상 3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4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14. 김광수·김경진·이찬열·조배숙· 정인화 · 장병완 · 김종회 · 황주홍 · 천정배 · 유성엽 의원 발의)

3월 12일 발의자 철회 요구